

서울특별시립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시립묘지등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묘지·화장장·납골 시설을 말한다.
2. “조성묘지”라 함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.
3. “납골묘지”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.
4. “산골”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뿐려 영구히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사용자”라 함은 시립묘지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자를 말한다.

제 2 장 장사문화개선 및 보존묘지 등의 지정

제3조 (장사문화 개선 등) ①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·산골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자치구의 공설화장장·공설납골시설의 설치·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 (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29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,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 (시 보존묘지의 지정) ①시장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(이하 “묘지소유자 등”이라 한다)이 묘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겸토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(이하 “보존묘지등”이라 한다)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게재하고, 당해 묘지소유자 등에게 시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교부한다.

③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향토 문화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3 장 시립묘지등의 설치·관리 등

제6조 (묘지 등의 사용허가) ①시립묘지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시장은 시립묘지등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 (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) ①시립묘지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시립묘지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결정한다.

③시장은 저소득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·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, 시장이 정한 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·관리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④제2항의 사용료·관리비와 제3항의 감면대상과 사용료·관리비를 다르게 정하는 대상 및 납

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 (사용자의 신고의무) 시립묘지 · 시립납골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

2.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

제9조 (사용기간 제한) ①시립묘지 · 시립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립묘지 · 시립납골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한다. 다만,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 (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) ①시립묘지 · 시립납골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.

②시립묘지등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, 매매 · 양도 · 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제11조 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묘지 · 시립납골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6조 · 제8조 · 제13조 · 제14조 ·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2.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3. 당해 시설의 신 · 증설 ·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4. 재해의 예방 · 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

②시장은 제1항 제1호 ·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수거 및 개장명령) ①사용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기간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.

제13조 (묘지의 사용면적) 시립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성묘지 : 5평 방미터 이내

2. 비조성묘지 : 10평 방미터 이내

3. 납골묘지 : 20평 방미터 이내

제14조 (분묘의 구조 등) ①시립분묘의 구조는 평장(봉분과 비석이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는 분묘를 말한다)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분묘형태를 변경하거나 분묘에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제1항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고 사망자 및 연고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 (분묘의 관리책임) 시립묘지 안의 분묘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성묘지 : 시장

2. 비조성묘지 : 사용자

제16조 (원상회복 및 실비변상) 시장은 사용자가 시립묘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.

제17조 (운영위탁) ① 시장은 시립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(이하 “운영”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수탁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.

제18조 (운영지원) 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 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위탁의 취소 등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
2.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21조 (지도 · 감독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· 서류 ·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.

제22조 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사용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 제정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(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인 시립묘지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0
------	----

2002년 12월 26일

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1월 4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2002년 12월 26일

(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창구 건설국장)

제안이유

-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가 사망한 때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하도록 한 행정 규정을 사망한 운영자 가족의 전업준비 등을 감안하여 점용허가 개신만료